의안번호	제 743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11월 일 (제360회)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임희무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7년 11월 21일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회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43

발의연월일 : 2017년 11월 21일
발 의 자 : 임회무・이의영・황규철・김인수・엄재창・임병운・이양섭 의원(7인)

1. 제안 이유

○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2016년 9월 폐지되고, 지방중소기업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을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함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,

○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○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(안 제1조 ~ 안 제2조)

○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의 조문 번호 변경(안 제2조)

3. 조례안 : 붙 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5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일자리기업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43조”를 “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2조의 17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 및 제42조”를 “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6”으로 한다.

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“충청북도기업진흥원(이하 “기업진흥원”라 한다)”이란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2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9 및「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」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.

제2조제15호 중 “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41조제3항”을 “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14의5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,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및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에 따라 충청북도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,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2. “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”이란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2. “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”이란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6에 따라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.

현 행	개 정 안
9. “충청북도기업진흥원(이하 “기업진흥원”라 한다)”이란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충청북도 조례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.	9. “충청북도기업진흥원(이하 “기업진흥원”라 한다)”이란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2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9 및 「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」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.
15. “신기술사업투자조합”이란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.	15. “신기술사업투자조합”이란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14의5호에 따라 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

제62조의15(육성계획의 수립) ① 시·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관할구역 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(이하 "육성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가 수립하는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 설립을 통한 지역별·업종별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원활한 사업장 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
2. 기술 및 기능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
3. 지방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와 경영안정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
4.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지방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

사항

5.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

6.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

7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·도별로 요청하는 사항

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시·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업종별·규모별 업체 수와 근로자 수 등 관할 구역 내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, 지방고용노동청,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⑤ 시·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는 육성계획의 수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62조의16(육성계획의 조정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·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·도의 계획 간에 중복되거나 서로 충돌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·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62조의17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② 정부는 시·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·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2조의22(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□ 여신전문금융업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4의5. “신기술사업투자조합“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.

가.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

나.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·운용하는 조합

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4조의29(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) 법 제62조의2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국가기술표준원
2. 중소기업진흥공단
3. 중소기업중앙회
4. 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」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5. 「민법 」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
6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
7. 「산업표준화법」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
8. 「산업발전법」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
9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